

항 소 취 하 서

사 건 20○○나○○○ 대여금 원고(항소인) ○○○ 피고(피항소인) 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항소인)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

2000. 00. 00.

위 원고(항소인)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고등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항소심 계속법원	제출기간	항소심의 종국판결약	≥ 52.50
제출부수	항소취하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	항소취하서 1부 및 상대통 · 항소가 취하되면 제1점 효력이 소멸되므로, 항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여 ·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 선고 71다1965 판결). 한 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 다는 취지는 아님(대법 ·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는 이 다시 항소심에 환경 그 중국판결이 없었던 결이 있기까지는 항소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 을 잃게 되어도 이는 것으로 주된 항소의 후 이므로, 이미 부대항소 대로 유효함(대법원 19 ·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 면 제1심 판결은 소의 시판대상은 새로운 소의 하는 것이 되므로, 그 그 대상이 없어 아무른 93다25875 판결). ·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 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	방 수만큼의 부분 당 수만큼의 부분 한 수만큼의 부분 한 수만을 위하여 다 함의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	되지만, 소가 취하되면 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이가 필요 없음(대법육 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기 선고 80다76 판결). 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 전치 있은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제기하면 되므로, 이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되므로, 이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무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인이 부대장소인이 부대장소인이 부대장소인이 부대장소인이 무대장소인이 보고 함께 보고	제1심 판결의 해버리는 것이 원 1971. 10. 22. 에 취하의 효로 한 한 취지 으로 단 사 잃고판에 이 한 후 로 어 이 적으로 이 의 해 작 한 이 주 한 한 이 하는
	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,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			
	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 판결).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